

의안번호	2126260
의 퇴 인	최형두 의원
회 답 일	2024. 1. 31.
추 계 번호	24A0087

핵심에너지 수급관리 및 수송위기 대응 등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핵심에너지 수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핵심에너지 수급관리위원회를 두는 경우 등의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에 5억 400만원, 2029년에 9,900만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 동안 총 9억원(연평균 1억 8,0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평균
핵심에너지 수급관리기본계획의 수립(안 제5조)	405	—	—	—	—	405	81.0
핵심에너지 수급관리위원회의 구성(안 제6조)	5.5	5.5	5.5	5.5	5.5	27.5	5.5
핵심에너지의 비축계획(안 제10조)	44	44	44	44	44	220	44
핵심에너지 수송위기대응계획(안 제11조)	44	44	44	44	44	220	44
핵심에너지 수송위기대응위원회의 구성(안 제12조)	5.5	5.5	5.5	5.5	5.5	27.5	5.5
합 계	504.0	99.0	99.0	99.0	99.0	900.0	180.0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조(핵심에너지 수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안보를 위한 핵심에너지 수급관리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핵심에너지 수급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 다만, 국내외 에너지안보 및 수송환경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음(제1항)	의무규정
2	안 제6조(핵심에너지 수급관)	핵심에너지 수급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핵심에너지 수급관리위원회(이하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리위원회의 구성)	“수급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둠(제1항)	
3	안 제8조(핵심에너지 수급관리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핵심에너지 수급위기에 대비하고 에너지안보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핵심에너지 수급관리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4	안 제10조(핵심에너지의 비축계획)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핵심에너지의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핵심에너지 비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5	안 제11조(핵심에너지 수송위기대응계획)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핵심에너지 수송위기 대응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핵심에너지 수송위기대응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6	안 제12조(핵심에너지 수송위기대응위원회의 구성)	핵심에너지 수송위기대응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국토교통부 협조를 통해 핵심에너지 수송위기대응위원회(이하 “수송위기대응위원회”라 한다)를 둠(제1항)	의무규정
7	안 제15조(핵심에너지 수송사업자의 의무 등)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경영상 중대한 영업 손실을 받은 핵심에너지 수송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8	안 제16조(핵심에너지 수송수단공급자의 의무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경영상 중대한 영업 손실을 받은 핵심에너지 수송수단공급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9	안 제17조(핵심에너지 화주의 의무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경영상 중대한 영업 손실을 받은 핵심에너지 화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10	안 제18조(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핵심에너지 수급 관리 및 수송위기 대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핵심에너지 공급기관, 핵심에너지 수송사업자 및 핵심에너지 수송수단 공급자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거나 기타 금융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11	안 제19조(핵심에너지 화주에 대한 조세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7조제2항의 조치에 따른 핵심에너지 화주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음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2	안 제20조(국제협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핵심에너지 수급 관리 및 수송위기 대응에 필요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제1항) 1. 핵심에너지 수급 관리 및 수송위기 대응 관련 외국 정부 및 국제조직 등과의 교섭 및 협정 체결 2. 핵심에너지 수급 관리 및 수송위기 대응 관련 해외 정보의 수집·분석을 위한 외국 정부 및 국제조직 등과의 정보교환 3. 핵심에너지 수급 관리 및 수송위기 대응 관련 공동 정책 조사·연구 4. 핵심에너지 수급 관리 및 수송위기 대응 관련 공동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핵심에너지 수급 관리 및 수송위기 대응 관련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재량규정
13	안 제21조(연구개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핵심에너지 수급 관리 및 수송위기 대응에 필요한 정책·기술개발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제1항) 1. 핵심에너지 수급 관리 및 수송위기 대응 관련 정책 연구개발 계획의 수립·시행 2. 핵심에너지 수급 관리 및 수송위기 대응 관련 기술 수요조사 및 관련 동향분석 등에 관한 사업 3. 핵심에너지 수급 관리 및 수송위기 대응 관련 기술의 개발·보급·확산 사업 4. 핵심에너지 수송사업자와 핵심에너지 화주의 상생협력 촉진 및 공정하고 안정적인 상호 동반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핵심에너지 수급 관리 및 수송위기 대응 관련 기술개발 및 기술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	재량규정
14	안 제22조(인력양성 및 교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핵심에너지 수급 관리 및 수송위기 대응 관련 산업육성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교육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5조(핵심 에너지 수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	· 소관 부처(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 계획 등을 반영하여 추계
2	안 제6조(핵심 에너지 수급관리위원회의 구성)	○	· 소관 부처(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 계획 등을 반영하여 추계
3	안 제8조(핵심 에너지 수급관리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X	· 제정안의 시스템과 유사한 사례로 현재 운영 중인 에너지정보통계센터가 있는데, 동 시스템의 확대 계획 등을 추정하기 어려워 제정안의 에너지 수급관리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참고로 에너지정보통계센터 관련 사업비는 2024년 예산 기준으로 27억 2,400만원임
4	안 제10조(핵심에너지의 비축계획)	○	· 소관 부처(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 계획 등을 반영하여 추계
5	안 제11조(핵심에너지 수송 위기대응계획)	○	· 소관 부처(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 계획 등을 반영하여 추계
6	안 제12조(핵심에너지 수송 위기대응위원회의 구성)	○	· 소관 부처(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 계획 등을 반영하여 추계
7	안 제15조(핵심에너지 수송 사업자의 의무 등)	X	· 제정안의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현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8	안 제16조(핵심에너지 수송 수단공급자의 의무 등)	X	· 제정안의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현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9	안 제17조(핵심에너지 수송 시설의 관리·유지 등)	X	· 제정안의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현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심에너지 화주의 의무 등)		정하도록 하여 현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												
10	안 제18조(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X	제정안의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이루어지며,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현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												
11	안 제19조(핵심에너지 화주에 대한 조세감면)	X	제정안의 조세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 규정되어야 가능하므로 제정안만으로는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												
12	안 제20조(국제협력)	X	제정안의 업무와 관련하여 현재 소관 부처(산업통상자원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 등을 고려할 때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다만, 제정안에 따라 신규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단위: 백만원) <table border="1"> <thead> <tr> <th></th><th>2022 결산</th><th>2023 예산</th><th>2024 예산</th></tr> </thead> <tbody> <tr> <td>자원협력기반구축</td><td>427</td><td>480</td><td>483</td></tr> <tr> <td>에너지국제공동연구(R&D)</td><td>20,982</td><td>22,944</td><td>28,540</td></tr> </tbody> </table>		2022 결산	2023 예산	2024 예산	자원협력기반구축	427	480	483	에너지국제공동연구(R&D)	20,982	22,944	28,540
	2022 결산	2023 예산	2024 예산												
자원협력기반구축	427	480	483												
에너지국제공동연구(R&D)	20,982	22,944	28,540												
13	안 제21조(연구개발)	X	제정안의 업무와 관련하여 현재 소관 부처(산업통상자원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 등을 고려할 때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다만, 제정안에 따라 신규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단위: 백만원) <table border="1"> <thead> <tr> <th></th><th>2022 결산</th><th>2023 예산</th><th>2024 예산</th></tr> </thead> <tbody> <tr> <td>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R&D)</td><td>220,194</td><td>237,177</td><td>234,354</td></tr> <tr> <td>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내 타이타늄 최적화 기술개발</td><td>—</td><td>3,010</td><td>3,075</td></tr> </tbody> </table>		2022 결산	2023 예산	2024 예산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R&D)	220,194	237,177	234,354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내 타이타늄 최적화 기술개발	—	3,010	3,075
	2022 결산	2023 예산	2024 예산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R&D)	220,194	237,177	234,354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내 타이타늄 최적화 기술개발	—	3,010	3,075												
14	안 제22조(인력양성 및 교육)	X	제정안의 업무와 관련하여 현재 소관 부처(기획재정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 등을 고려할 때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다만, 제정안에 따라 신규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단위: 백만원) <table border="1"> <thead> <tr> <th></th><th>2022 결산</th><th>2023 예산</th><th>2024 예산</th></tr> </thead> <tbody> <tr> <td>에너지인력양성사업(R&D)</td><td>46,494</td><td>50,425</td><td>58,921</td></tr> </tbody> </table>		2022 결산	2023 예산	2024 예산	에너지인력양성사업(R&D)	46,494	50,425	58,921				
	2022 결산	2023 예산	2024 예산												
에너지인력양성사업(R&D)	46,494	50,425	58,921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제정안의 재정수반요인 중 현시점에서 지원 계획을 확정하기 어렵거나, 구체적인 지원·보상 등의 내용이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는 항목은 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 제정안의 재정수반요인 중 신규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 계획, 유사 사례 등을 반영하여 추계함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핵심에너지 수급관리기본계획의 수립(안 제5조)
 - 안 제5조에 따른 핵심에너지 수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의 유사 사례를 고려할 때 5년마다 4억 5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 유사 사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시한 “장기 천연가스 수요전망 및 장·단기 수요 예측모형 개발” 용역(2023. 10. 11. ~ 2025. 2. 10., 4억 500만원)이 있음

[표 3]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핵심에너지 수급관리기본계획의 수립(안 제5조)	405	—	—	—	—	40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핵심에너지 수급관리위원회의 구성(안 제6조)
 - 안 제6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핵심에너지 수급관리위원회를 두면 회

의 참석수당 등 운영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동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제2항) 회의 참석수당 지급대상인 민간위원의 수는 과반(11명)으로 가정함
- 동 위원회의 기능을 고려하여 회의는 반기별로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하면 운영비용은 연간 550만원(11명×2회×25만원)으로 추계됨
 - 동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음(안 제7조)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핵심에너지 수급관리와 관련된 국가전략·정책에 관한 사항
 3. 핵심에너지 현황의 진단·평가 및 공급망(국내외에서 핵심에너지를 획득하고 중간 또는 최종수요자에게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말한다) 점검·분석에 관한 사항
 4. 핵심에너지의 비축의무 및 비축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에너지안보 측면에서 핵심에너지 수급관리에 관한 것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표 4]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핵심에너지 수급관리위원회의 구성(안 제6조)	5.5	5.5	5.5	5.5	5.5	27.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핵심에너지의 비축계획(안 제10조)

- 안 제10조에 따른 핵심에너지의 비축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의 유사 사례를 고려할 때 연간 4,4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유사 사례는 3년마다 수립하는 석유비축계획 수립 용역이 있으며, 최근 3건의 용역 금액의 평균은 4,400만원 수준임('13년 46.5백만원, '16년 40.0백만원, '19년 44.8백만원)

[표 5]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핵심에너지의 비축계획 (안 제10조)	44	44	44	44	44	22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핵심에너지 수송위기대응계획(안 제11조)

- 안 제11조에 따른 핵심에너지 수송위기대응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는 기본·시행계획에 위기대응 체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가 다수이므로 별도의 위기대응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임
- 적합한 유사 사례가 없으므로 제정안의 핵심에너지 비축계획 사례에 준하여 추계하면, 연간 4,4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표 6]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핵심에너지 수송위기대 응계획(안 제11조)	44	44	44	44	44	22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핵심에너지 수송위기대응위원회의 구성(안 제12조)

- 안 제1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핵심에너지 수송위기대응위원회를 두면 회의 참석수당 등 운영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동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제2항) 회의 참석수당 지급대상인 민간위원의 수는 과반(11명)으로 가정함
- 동 위원회의 기능을 고려하여 회의는 반기별로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하면 운영비용은 연간 550만원(11명×2회×25만원)으로 추계됨
 - － 동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음(안 제13조)
 1. 핵심에너지 수송위기관리의 목표에 관한 사항
 2. 핵심에너지 수송수단별 수송현황에 관한 사항
 3. 핵심에너지 수송위기 진단에 관한 사항
 4. 수송위기 단계별 수송안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에너지안보 측면에서 핵심에너지 수송위기대응에 관한 것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표 7]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핵심에너지 수송위기대응 위원회의 구성(안 제12조)	5.5	5.5	5.5	5.5	5.5	27.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제정안의 재정수반요인 중 현시점에서 추계가 가능한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유사 사례 등을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 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윤주철	권아영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윤주철	02-6788-4655	yjc@nabo.go.kr